

제8회 2010년도 1급, 2급, 3급 청소년상담사

국 가 자 격 검 정 요 강

2010. 1.

보 건 복 지 가 족 부
한 국 청 소 년 상 담 원

차 례

제8회 2010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의 개요	1
I. 2010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안내	2
1. 응시자격	2
2. 자격검정시험 방법·과목	5
3. 제출서류	6
4. 원서교부 및 접수	8
5.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11
6.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장소	13
7. 자격검정 합격자 공고	13
8.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13
9. 최종합격자 자격증 교부	13
II. 자격검정 응시 관련 참고사항	14
1.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안내	14
2. 원서 우편접수 안내	17
3. 원서 접수처 위치·약도	18
III. 유의사항 및 문의 안내	19
1. 자격검정 응시자 유의사항	19
2. 자격검정 안내 및 문의처	21
[부록 1]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 지침	22

제8회 2010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의 개요

○ 주최·주관기관

- 자격검정 주최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자격검정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 자격검정 시행 장소

- 원서교부처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http://www.youthcounselor.or.kr>)
- 서류접수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교육연수팀
- 자격검정 필기 및 면접시험장소 : 추후발표
- 자격검정합격자 연수장소 : 추후발표
- 자격검정수수료 : 30,000원

○ 2010년 자격검정 주요 일정

- 자격검정 시행 공고 : 2010. 1. 18(일간지, 홈페이지 공고)
- 자격검정 원서 교부 및 작성 : 2010. 2. 17 ~ 3. 4(인터넷 공고)
- 자격검정 서류 접수 : 2010. 3. 2 ~ 3. 4(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3. 31
- 자격검정 필기시험일 : 2010. 4. 25
-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0. 5. 12
- 자격검정 면접시험일 : 2010. 5. 23
-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 2010. 6. 4
-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 자세한 일정은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분산 연수 및 집중 연수 : 7월~10월 중 각급별 총 100시간 이상 연수
- 최종 합격자 자격증 교부 : 2010년 12월 중(자세한 일정은 추후발표)

○ 자격검정관련 문의·안내

- 담당기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교육연수팀
- 주 소 : 우)100-882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번지 흥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 화 : 02-2250-3128/3129
- 팩 스 : 02-2250-3008
- 인 터 넷 : www.youthcounselor.or.kr

I. 2010년도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안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 3관련)>

구분	자 격 요 건
1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 주 : 상담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 ※ 참고사항 1 : 청소년상담사 1, 2, 3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학교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상담관련 분야(p.3 참조)를 전공하여야 함
- ※ 참고사항 2 : 전공의 경우 대학은 학과명, 대학원은 세부전공명 기준
- ※ 참고사항 3 : 졸업 예정자의 경우 2010년 2월 졸업 예정자에 한하여 인정
- ※ 참고사항 4 : 청소년상담사의 응시자격요건에는 ‘연령 제한 규정’이 없음

1) 청소년상담사 부적격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다(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관련분야 인정 기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 인정

3) 상담실무경력 : [부록 1] 참조(p.22)

-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 (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청소년시설(청소년기본법 제17조)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및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소년상담사 상담실무경력인정 민간상담기관 심사기준

-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상담실무경력 증빙 서류(별지 2호 서식)**를 상담원에 제출하여야 함(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10조)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별표1에 의거)

- ※ 개인상담 :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을 인정
 - ※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
 -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상담관련워크샵에 **참가**한 경력을 인정
 - ※ 심리검사
 - 1, 2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 3급 : 별도의 심리검사기준을 두지 않음(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는 제외)
- 세부사항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www.youthcounselor.or.kr)의 “취득절차”코너 참조

2. 자격검정시험 방법·과목

1) 검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2) 검정과목

- 1급 :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 2급 : 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 3급 : 필수 5과목, 선택 1과목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시행령 제23조제2항 별표4)>

등 급	검 정 과 목		검정방법	
	구분	과 목		
1급 청소년상담사 (5과목)	필수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필기 시험	면접
	선택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6과목)	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기 시험	면접
	선택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선택과목의 변경은 서류접수 기간에(3월 4일까지) 한하여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1) 2010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신규 응시자)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은 하지 않음) -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2010년 2월 졸업예정증명서까지 인정) - 검정수수료 30,000원(검정수수료납부확인서 또는 입금증 제출)
해당자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졸업년도 전공커리큘럼) -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소정양식)

2) 2010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재응시자(2008년, 2009년 서류전형합격자)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은 하지 않음)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서류전형 합격확인서 1통 (이전 시험에 응시했던 등급과 동일 급수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검정수수료 30,000원(검정수수료납부확인서 또는 입금증 제출)

※ 서류전형 합격확인서는 원서교부 기간 중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의 ‘접수/시험’ → ‘응시원서 작성 및 수정’에서 원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자격증/확인서발급’→‘확인서발급’→‘서류전형 합격확인서’에서 확인서 출력(원서 작성 후 출력 가능)

3) 2010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면접시험 재응시자(2009년도 자격검정 필기시험합격자)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작성(제출은 하지 않음)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확인서 1통 (이전 시험에 응시했던 등급과 동일 급수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 검정수수료 30,000원(검정수수료납부확인서 또는 입금증 제출)

※ 필기시험 합격확인서는 원서교부 기간 중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의 ‘접수/시험’ → ‘응시원서 작성 및 수정’에서 원서 작성 후 확인버튼 클릭, ‘자격증/확인서발급’→‘확인서발급’→‘필기시험 합격확인서’에서 확인서 출력(원서 작성 후 출력 가능)

4)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시 미비된 서류가 있을시 탈락 처리됨

-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분야 이외의 학과로써 유사관련학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이상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 성적증명서 또는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졸업년도 학과 커리큘럼

- 상담관련분야 연계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 이상 전공교과목(전공선택 혹은 전공필수)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 일반선택과목 등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원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단, 동사무소 발급본 혹은 '인터넷 출력'은 원본임을 명시하는 증명서의 경우는 예외)

※ 인터넷 출력서류는 2010년 1월 이후 출력 서류만 인정함

-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에는 각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 날인이 있어야 인정됨
- 외국학위자의 경우, 관련서류(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를 공증하고 공증서류 원본과 관련서류 번역본을 제출해야 됨

4. 원서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 교부기간 : 2010년 2월 17일 ~ 2010년 3월 4일(16일간)
- 교부방법 : 인터넷 교부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
→ ‘접수/시험’ 클릭 → ‘응시원서 작성 및 수정’ 클릭
- 원서작성 방식
 - 홈페이지에서 직접 원서를 작성(별도 제출하지 않음)
 -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 작성 :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상담 실시 기관의 기관장의 확인을 거쳐 직인을 날인받아 제출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 → ‘취득절차’ 클릭 → ‘응시서류’ 클릭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 1,2급’ 및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 3급’ 중 응시등급에 해당되는 양식을 클릭한 뒤 출력)

2)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10년 3월 2일 ~ 3월 4일(3일간) 10:00 ~ 18:00
 -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재응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함
(홈페이지 www.youthcounselor.or.kr → ‘접수/시험’ 클릭 → ‘응시원서 작성 및 수정’ 클릭)
- 접수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교육연수팀
(우100-882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흥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6층 역량개발실 교육연수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3월 4일까지 도착된 응시서류에 한하되, 3월 4일 소인의 우편서류인 경우 접수 가능)
 - ※ 협조사항 : 서류접수가 늦어지면 서류전형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본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람
- 접수내용 :
 - 인터넷 접수 : 자격검정 원서(인터넷으로 작성하면 제출 처리됨)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30,000원(검정수수료납부확인서 또는 입금증 포함), 타학과의 경우 상담관련분야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서류(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혹은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졸업년도 학과커리큘럼),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검정수수료 납부방법

○ 검정수수료: 30,000원

○ 수수료 납부기간: 2010년 2월 17일 ~ 3월 4일(18:00 마감)

○ 인터넷 전자결제

- 인터넷 전자결제가능서비스 :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전자결제 시스템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주)데이콤과 약정한 것으로 일반 은행홈페이지에서 이용하는 인터넷뱅킹과 다름에 유의

- 전자지불대행업체 : (주)데이콤

- 이용안내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의 “접수/시험”메뉴의 “검정수수료 납부 및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후 반드시 검정수수료 납부확인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내역서 포함)를 출력하여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주의사항

※ 국내 대부분의 신용카드사 및 은행(해외카드사 및 해외은행 이용불가) 이용가능

※ 데이콤이 제공하는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인터넷전자결제 카드청구서 및 계좌이체관련 명의를 데이콤이 입력되므로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부정거래를 막기 위해 통장비밀번호 확인 외에도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이외에 일부은행에서 PC뱅킹 ID, 보안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은행도 있으니 이용시 유의

※ 계좌이체 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의 실명 및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야만 서비스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인터넷전자결제 이외의 납입 방법

- 납입방법 :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CD기 이용, 폰뱅킹(현금 및 우편환 이용불가)

- 계좌번호 : 농협 057-17-002886, 예금주 한국청소년상담원

- 주의사항 : 반드시 납입기간 내에 검정수수료를 입금하고, 반드시 검정수수료 납부확인서 또는 입금증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인터넷뱅킹, 무통장 입금 등 본원이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인터넷전자결제서비스 이외의 납입 방법을 이용하실 때 발생하는 은행이용 수수료는 본인 부담

※ 원서접수시 반드시 검정수수료 납부확인서(인터넷뱅킹 이용내역서, 무통장입금증, CD명세서 등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본인여부 확인가능

※ CD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시 기계에 따라 본인의 실명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용에 유의

※ 동명이인 등으로 인해 본인 확인이 지연되어 수수료 납입여부 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니 입금시 반드시 본인 실명 및 해당급수 기재(예 : 홍길동1급)

○ 환불 관련 안내

- 환불신청기간 : 2010년 2월 17일 ~ 2010년 3월 9일(18:00 마감)
- ※ 환불신청기간 이후 환불신청불가(단, 원서접수 후 서류전형 탈락자는 응시원서 작성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별도의 환불신청 없이 일부수수료 자동 환불)
- ※ 환불신청기간 내 환불신청 시 전액환불
- 환불신청방법 :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접수/시험' 메뉴의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을 클릭하여 환불신청
- ※ 원서접수기간에 원서작성단계에서 본인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환불의사가 있을 시 환불기간 내에 반드시 환불신청을 해야함(단, 서류전형 탈락자는 환불신청없이 자동환불)
- 환불은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종료 후 일괄 환불처리 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됨
- 환불금액안내

환불신청기간 내 환불시	서류전형 탈락으로 인한 자동환불시
30,000원	20,000원

○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서류 및 검정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을 통한 원서접수도 가능함

5. 자격검정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2010년 3월 31일 홈페이지에 발표)
- 시험일시 : 2010년 4월 25일(일) 09:30 ~ 13:00(09:00까지 입실완료)
- 시험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영 역	과 목 수	시 험 시 간		
			교 시	시 간	소요시간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선택	3과목 4과목중 2과목	시험지 배부	09:20 ~ 09:30	10분
			1교시	09:30 ~ 11:00	90분
			쉬는 시간	11:00 ~ 11:50	50분
			시험지 배부	11:50 ~ 12:00	10분
			2교시	12:00 ~ 13:00	60분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선택	4과목 4과목중 2과목	시험지 배부	09:20 ~ 09:30	10분
			1교시	09:30 ~ 11:30	120분
			쉬는 시간	11:30 ~ 11:50	20분
			시험지 배부	11:50 ~ 12:00	10분
			2교시	12:00 ~ 13:00	60분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선택	5과목 2과목중 1과목	시험지 배부	09:20 ~ 09:30	10분
			1교시	09:30 ~ 11:30	120분
			쉬는 시간	11:30 ~ 11:50	20분
			시험지 배부	11:50 ~ 12:00	10분
			2교시	12:00 ~ 13:00	60분

- 시험당일 준비물
 - 수험표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2010. 3. 31) 후 4.19부터 인터넷에서 출력
 - 신분증 :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도 가능)
 - 필기도구 : 컴퓨터용 검정 사인펜
- 필기시험 문제수 : 각 과목당 30문항
- 합격기준 :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절대평가 기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0년 5월 12일(수)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 발표
- 유의사항
 - 고사장 정문이 09:20에 폐쇄되므로, 이전에 반드시 도착해야 함
 - 고사실에 입실한 후 시험이 시작되면, 응시생은 고사실 밖 출입 불가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생이 고사실에서 퇴실한 경우 해당시험시간에 한해 재입실 불가
- 부정행위 및 시험문제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퇴실 조치되며, **부정행위자의 경우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해당 응시생의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함**(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26조)

※ ‘다음회’의 의미 : 익년에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을 의미하며, 청소년상담사 수급 조절의 관계로 시험이 연기될 경우 추후 시험개시년이 ‘다음회’가 됨

예) 2010년도 제8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자의 경우, 2011년에 제9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이 시행된다면 2011년도 시험에서의 응시자격이 박탈되며, 만약 제9회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이 2012년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2012년도 시험에서 응시자격이 박탈됨

부정행위자 정의

- 답안 작성 이외에 시험 문제 또는 답내용을 다른 곳에 옮겨 적는 행위
- 문제지의 일부를 임의로 절취하거나 소지한 채 퇴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휴대전화, 무선기기 등)을 휴대한 경우
 - 전원차단 상태에서 통화사실 없이 단순 휴대한 경우 및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
 - 시험 도중 사용 사실이 적발된 경우
-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응시자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보는 행위
- 응시자간의 성명, 수험번호 등 바꿔 답안지를 작성, 제출한 경우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기재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된 경우
- 시험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감독의 본인 확인 및 휴대전화 등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기타 시험감독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위 내용은 2008년 1차 자격검정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었으니 응시생은 상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6. 자격검정 면접시험 일시·장소

- 대 상 : 자격검정 필기시험 합격자 / 면접시험 채용시자
- 면접일시 : 2010년 5월 23일(일) 09:00~(시간대별로 대기)
- 면접방법 및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7. 자격검정 합격자 공고

- 자격검정 합격자 공고 일시 : 2010년도 6월 4일(금)
- 자격검정 합격자 공고 방법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에 발표
- 채용시 규정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8. 자격검정 합격자 연수

- 연수 개요
 - 장 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등
 - 대 상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합격자
 - 일 정 : 자세한 일정은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시(2010. 6. 4) 공고
·분산 연수 및 집중 연수 7월 ~ 10월 중 각 급별 100시간 이상 실시

9. 최종합격자 자격증 교부

- 교부일시 : 2010년 12월
- 대 상 :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
- 교부장소·방법
 - 교부일정 : 본원 홈페이지 공고 및 연수 수료자 대상 e-mail 안내
 - 교부장소 :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부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지참) 방문 직접 수령

II. 자격검정 응시 관련 참고사항

1. 응시자격별 제출서류 안내(신규응시자)

■ 1급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밖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1) 상담관련분야 전공 박사학위 취득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③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2) 상담관련분야 전공 석사학위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③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⑤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써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②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1통 ③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④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⑥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원본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 2급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p>(1) 상담관련분야 전공 석사학위 취득 자</p> <p>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③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p>
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p>(2)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p> <p>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③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⑤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p>
3. 3급 청소년상담사로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p>(3)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p> <p>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1통</p>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p>③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④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⑤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⑥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p>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원본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 3급

응시자격 요건	제출서류 목록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 졸업(예정)자	(1)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졸업예정자는 2010년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③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자	(2)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하고 상담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③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상담관련 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④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⑤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③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④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4)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③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④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5.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①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원서 인터넷 작성 ②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1통 ③ 상담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통 ④ 수수료 입금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각종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2. 서류 우편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10년 3월 2일 ~ 2010년 3월 4일(10:00 ~ 18:00)

- 마감일(3월 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함(3월 4일 소인 우편 서류 포함)

※ 협조사항 : 서류접수가 늦어지면 서류전형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본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람

○ 접수처

- 주소 : 서울 중구 신당 6동 292-61 흥진빌딩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교육연수팀 6층
우)100-882 전화 : 02) 2250-3128/3129

- 발송봉투 겉면 여백에 “<자격검정 응시원서>”라고 기재할 것.

○ 제출내용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

- 검정수수료 납부확인서(인터넷뱅킹 이용내역서, 무통장입금증, CD명세서 등 포함)

3. 원서 접수처(한국청소년상담원) 위치·약도

○ 위치 : 서울 중구 신당6동 292-61 흥진빌딩 내 한국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교육연수팀 6층



○ 교통편 *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주차 불가)

- 지하철

- 2호선 : 신당역에서 하차, 4번 출구(약수동 방향)로 나와 사거리에서 약수동 방향 길로 직진(도보로 10분)
- 3호선 : 약수역에서 하차, 3번 출구(신당우체국 / 흥인초등학교)로 나와서 버스를 이용, 신당사거리방면으로 직진(도보로 15분)
- 5호선 / 6호선 : 청구역에서 하차, 2번 출구로 나와서 흥인초등학교를 지나 100m 정도 직진(도보로 3분)

- 시내버스

- 신당역 정류장 하차 → 0211, 1014, 1017, 2012, 2015, 2233, 263, 371번
- 하이마트앞 정류장 하차 → 142, 147, 2233, 6211번
- 청구역 정류장 하차 → 0212, 2233번

Ⅲ. 유의사항 및 문의 안내

1. 자격검정 응시자 유의사항

1) 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2월 17일 10:00이후 본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할 것)

- ① 응시등급 : 응시하고자 하는 등급 기재
- ② 현등급 : 기재하지 말 것
- ③ 성명 : 한글 및 한자로 기입할 것
(한자의 경우, 한글에서 F9키를 이용하여 변환한 후 복사하여 사용하면 편리함)
- ④ 성별 : 해당되는 곳에 클릭할 것
- ⑤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록할 것
- ⑥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의 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 ⑦ 주소 : 우편번호, 번지, 통, 반(동, 호)을 정확히 기재할 것. **전화번호는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⑧ 현 직장명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명, 직위를 정확히 기재할 것
- ⑨ e-mail주소 : 본인 e-mail주소를 기재할 것
- ⑩ 학력 :
 - 출신학교명과 학과 및 졸업년월일 기재하고 수학구분 중 해당하는 것에 ○표할 것
(학력의 작성칸이 부족할 경우, 등급별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위만** 기록할 것)
예)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생의 학력이 '00고등학교 졸업 / 00대학교 서양미술학과 졸업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미술전공 석사 수료 / 00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 수료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석사학위 취득'일 경우
→ 2급 응시자격과 관련된 학력인 '00고등학교 졸업 / 00대학교 서양미술학과 졸업 / 00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상담심리전공 졸업'만 기록할 것
 - 학점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대학교' 작성 칸에 학위를 취득한 기관명과 학점 운영제를 함께 기록하고 '졸업'으로 처리한다.
예) 2010년 2월 20일 '00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운영제' 대학교 졸업
- ⑪ 검정선택과목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선택과목을 기재할 것
 - 응시하고자 하는 검정과목을 다음 <표1>에서 선택하여 기입할 것
 - 1급 및 2급 응시자는 각각 해당 선택과목 4개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입할 것
 - 3급 응시자는 각각 해당 선택과목 2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기입할 것

※ 선택과목 변경가능일 : 2010년 2월 17일 ~ 2010년 3월 4일(10:00 ~ 18:00)

<표 1> 등급별 검정선택과목

구 분		과 목
1급	선택영역 (4과목 중 2과목 선택)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2급	선택영역 (4과목 중 2과목 선택)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3급	선택영역 (2과목 중 1과목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⑫ 필기시험합격년도 : 면접시험 재응시자만 기재

⑬ 상담실무경력사항 : 상담실무경력을 기재할 것(상담실무와 관련된 경력 사항 모두 기재)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상반신 사진을 인터넷으로 원서 작성 시 **파일로 첨부**할 것.

2) 기타 유의 사항

- 접수가 완료된 자격검정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격검정 시험 당일
 - 시험 당일 필기시험 고사장 정문 게시판의 공지내용(시험장 배치도 등) 확인 후 배정된 교실로 이동
 - 시험 약 일주일 전부터 본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 당일 유의사항 및 시험장 배치도 등을 게시할 계획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대중교통수단 이용 요망(시험 당일 주차 불가)

2. 자격검정 안내 및 문의처

○ 자격검정 인터넷 안내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 <http://www.youthcounselor.or.kr>
- 자격검정과 관련된 공지사항이 계속 갱신되므로 주기적으로 점검 요망

○ 인터넷 안내 주요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교부	2010. 2. 17 ~ 3. 4	인터넷 교부
원서접수	2010. 3. 2 ~ 3. 4	방문 및 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0. 3. 31	홈페이지 발표
자격검정 필기시험 시행	2010. 4. 2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0. 5. 12	홈페이지 발표
자격검정 면접시험 시행	2010. 5. 23	
자격검정 합격자 발표 및 연수 공고	2010. 6. 4	홈페이지 발표
연수신청	2010. 6	인터넷 접수
연수실시	분산 연수 및 집중 연수 7월~10월 중 각급별 100시간이상	홈페이지 발표
자격증 교부	2010. 12	직접 수령 (위임 수령 가능)

○ 자격검정관련 안내 및 문의처

<p>한국 청소년 상담원</p> <p>우) 100-882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6동 292-61 홍진빌딩內</p> <p>전화 : (02)2250-3128/3129 팩스 : (02)2250-3008</p> <p>홈페이지 : http://www.youthcounselor.or.kr</p>

[부록 1]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 지침

1. 상담실무경력의 인정 기준

1)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관

: 상담실무경력은 특정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표 1>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

<표 1> 상담실무경력 인정 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지방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 · 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

예)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성폭력상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

- 1급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요건에 준하는 1인 이상의 자가 설립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 ·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 서류전형시 기관실사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2) 상담실무경력의 세부 인정기준

- (1) 상담실무경력은 응시자격관련 학위 취득 및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을 말한다.
 예) 2007년도 2월 타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2007년 3월 이후 상담실무경력을 인정한다.
- (2)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실적을 동시에 갖춘 연도만을 상담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예) 3급 응시자가 2007년 11월 ~ 2008년 11월 동안 개인상담을 20회 이상 실시하고, 집단상담을 6시간이상 참가했으나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의 상담실무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3) 응시등급별로 1년간 상담실무 충족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1년간 기준을 확인하여 작성한다(<표 2> 참조).

<표 2>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참가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별표1에 의거)

- (4) 상담실무경력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대해 연도마다 1년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응시생이 갖춰야하는 총 연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인정한다.
 예) 상담관련학과 석사취득자로서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 연도마다 개인상담 50회이상,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하고 총 4년의 상담실무경력(개인상담 200회 이상, 집단상담 96시간 이상, 심리검사 40사례 이상)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의 작성시 유의사항

- 1)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 양식 출력 :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검정·연수 홈페이지의 '취득절차' 클릭 → '응시서류' → 1, 2급'상담실무경력 인정 관련 양식'과 3급'상담실무경력 인정 관련 양식' 중 응시등급에 해당되는 양식을 클릭, 출력하여 작성
- 2) 응시등급별로 상담실무를 증빙해야 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응시자의 응시등급 및 응시자격별 상담실무증빙 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담실무경력증빙서류를 작성한다(<표 3> 참조).
예) 3급 응시자 중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취득자는 졸업 후 2년의 상담실무경력을 증빙해야하고, 타분야 전문학사취득자는 졸업 후 4년의 상담실무경력을 증빙해야한다.
- 3)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을 작성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한다.
- 4) 작성을 완료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받아** 한국 청소년상담원 역량개발실 서류접수처에 제출한다(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10조).
- 5) 외국에서 쌓은 상담실무경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담실무경력서류를 작성하여 상담실무기관의 기관장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이때, 외국어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공증을 받아 공증서류 원본과 상담실무경력서류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 서류전형시 기관실사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표 3> 각 급별 상담실무경력 기준 세부내역

응시 등급	자격요건	상담유형	1년간 실시(참가)경력	실무경력 충족연수	총계	비고	
1급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4년	200회	1년간 실시경력의 최소기준이 년도 마다 충족되어야 함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4년	96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4년	40사례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3년		1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3년		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3년		30사례
2급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3년	1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3년	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3년	30사례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2년		10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2년		48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2년		20사례
3급	상담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2년	4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2년	12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2년	6사례		
	다분야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2년		4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2년		12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2년		6사례
	다분야 전공 전문대학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4년	8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4년	24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4년	12사례	
	고등학교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5년	10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5년	30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5년	15사례	

3. 상담실무증빙서류 작성 세부지침

1) 총괄표

- 각 년간 기준은 ‘년 월~년 월’ 형식으로 작성한다.
- 총괄표에 작성된 전체 실시경력의 회수 및 시간, 사례수와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세부기록에 따른 실시경력이 일치되는지 확인한다.
- 1년간 특정기간 내에 연간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라도 서류접수 전까지 충족해야할 전체 년수 및 개월 수를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예) 3급 응시자 중 타분야 학사취득자로서 상담실무경력을 2년간 증빙해야할 경우 → 2006년 10월부터 상담실무경력을 쌓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2006년 10월~2007년 6월에 걸쳐 개인상담 20회 및 심리검사 3사례를 실시하고, 집단상담을 6시간 참가하고, 2007년 7월~2008년 2월에 걸쳐 동일 실적을 쌓았다고 해도 2006년 10월~2008년 2월(17개월)이라는 기간은 총 2년(24개월)이라는 년수 및 개월 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상담실무경력 미달로 분류되어,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예 시>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1급)

응 시 자(응시등급) : 김성명 (1 급)

**1년간 기준 최소시간 충족 확인

연 도 별	상담유형	실시경력
2005년 2월 ~ 2006년 1월	개인상담	총 50 회 이상
	집단상담	총 24 시간 이상
	심리검사	총 10 사례 이상
2006년 2월 ~ 2007년 1월	개인상담	총 50 회 이상
	집단상담	총 24 시간 이상
	심리검사	총 10 사례 이상
2007년 2월 ~ 2008년 1월	개인상담	총 50 회 이상
	집단상담	총 24 시간 이상
	심리검사	총 10 사례 이상
2008년 2월 ~ 2009년 1월	개인상담	총 50 회 이상
	집단상담	총 24 시간 이상
	심리검사	총 10 사례 이상

※ 이후부터 제시되는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의 기록양식 <예시>는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상담실무경력 4년을 증빙하여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개인상담기록 및 개인상담상세기록

- (1)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만을 인정한다.
- (2) ‘개인상담 회수’란 개인상담 사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수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상담 1년간 기준 50회기’의 의미는 내담자 50명에 대한 50사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별로 당해년에 시행된 상담회수에 따라 한 페이지씩 작성하면 된다.
 예) 1급 응시자의 경우 2007년 1월~12월 기간동안 개인상담을 A내담자를 대상으로 28회기, B내담자를 대상으로 5회기, C내담자를 대상으로 20회기를 실시했다면 2007년도의 개인상담상세기록은 **내담자별로 1장씩 기록**하면 된다.
- (3) 개인상담기록지에 제시된 전체 상담기간, 상담회수, 상담기관 및 장소와 개인상담상세기록에 따른 실시경력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한다.
- (4)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만큼 개인상담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 ‘개인상담기록’표에 총 10사례를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상세기록’은 총 10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 (5) 개인상담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예 시>

2-1 개인상담기록(1급)

**** 연도별 개인상담기록의 기간과 상담회수 확인**

사례번호	상담기간	상담회수	상담기관 및 장소
1	2006년 2월 23일부터 2006년 5월 11일까지	10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2	2006년 3월 28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40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3	2007년 2월 28일부터 2007년 6월 10일까지	15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4	2008년 2월 21일부터 2008년 11월 31일까지	35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5	2008년 2월 23일부터 2008년 7월 11일까지	18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6	2008년 2월 28일부터 2008년 9월 29일까지	32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7	2009년 2월 23일부터 2009년 5월 11일까지	10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8	2009년 2월 28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	40 회	한국청소년상담원
총 상담회수		총 200회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50회*4년=200회 이상**

2-2 개인상담 상세기록(1급)

**** '2-1개인상담기록'에 맞추어 '2-2개인상담상세기록'을 사례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사례번호	1 (개인상담기록지 사례번호 1번 내담자)		상담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내담자 인식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18 세	학 력	고재
상담기간	2009년 2 월 23 일부터 2009년 5 월 11 일까지 (개인상담기록지와 동일)		총 상담횟수		총 10 회	
주호소 문제	<p>■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 및 호소 문제의 배경 작성</p> <p>예) 자꾸 잠을 나가고 싶는데.....</p>					
상담목표	<p>■ 내담자와 협의한 상담목표 및 전략 작성</p> <p>예) 1.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상담동기를 높이는.....</p>					
상담과정 및 내용	<p>■ 전체 상담 진행과정을 간략히 기술</p> <p>예) 가족에 대한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p>					
평 가	<p>■ 상담목표 달성정도 및 내담자의 남아있는 주제, 추수지도계획 등 기술</p> <p>예)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횟수가.....</p>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3) 집단상담실시(참가)기록 및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

(1) 집단상담 관련 인정 기준

-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한다.
-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에 집단원으로서 참가하거나, 심리교육강좌 및 상담 workshop에 수강생으로 참가한 경력을 인정한다.

(2) 집단상담의 유형

- 비구조화집단상담 : 집단내 촉진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집단역동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집단
예) T-집단, 참만남집단상담 등
- 구조화집단상담 : 집단원들이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이해하거나 혹은 인생의 힘든 전환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
예) 자기주장행동개발집단, 또래상담프로그램, 가치관명료화집단상담, 자기조절집단프로그램 등

(3)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에 제시된 집단수만큼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지에 총 7개의 집단을 제시하였다면, 집단별 실시(참가)상세기록은 총 7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4)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예 시 >

3-1 집단상담 실시기록(1급)

**** 집단상담기록의 기간과 상담시간 확인**

번호	집단명	상담기간	상담시간	실시/참가	상담기관 및 장소
1	가치관 명료화 집단훈련	2005년 2월 23일부터 2005년 5월 11일까지	10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2	진로 탐색 집단상담	2005년 8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14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3	사이코드라마	2006년 6월 25일부터 2006년 9월 9일까지	24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4	분노 조절 집단상담	2007년 4월 20일부터 2007년 6월 21일까지	16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5	계위중독예방강화단상담	2007년 4월 20일부터 2007년 7월 14일까지	8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6	진로 탐색 집단상담	2003년 9월 9일부터 2003년 11월 31일까지	16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7	사이코드라마	2008년 10월 23일부터 2008년 12월 1일까지	8 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원
총 집단상담 시간			96시간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24시간*4년=96시간 이상**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

**** '3-1 집단상담 실시기록'에 맞추어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번호	1	집단명	가치관명료화 집단훈련	
참가인원	10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집단참가대상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기타			
집단상담기간	2009년 2월 23일 ~ 2009년 5월 11일	집단상담시간	10시간	
집단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훈련 목표 작성 예) 가치관 명료화의 개념을 이해.....			
집단의 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 과정 및 내용 작성 예) '선택 행동'의 불가분성을 이해하기위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목표 달성정도, 추수상담 계획 등 기술 예) 집단원들로 하여금 선택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 3-2. 집단별 참가 상세기록 (3급 응시자만 작성)

** '3-1 집단상담 참가기록'에 맞추어 '3-2 집단별 참가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번호	1	집 단 명	부모교육 workshop (*해당 범위: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상담관련workshop 및 상담관련교육과정 참가)	
지도자 성명	교육강사 혹은 상담전문가	지도자 소속 및 직위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조교수	
참가 인원	50 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집단상담기간	2009년 6월 25일 ~ 2009년 6월 25일	집단상담시간	6 시간	
집단의 목표	<p>■ 부모교육workshop의 학습 목표 작성</p> <p>예) 부모의 자기성장 및 자질 향상을 통해.....</p>			
집단의 과정 및 내용	<p>■ workshop 과정 및 내용 작성</p> <p>예) 다시보는 나와 우리가족 : 가계도를 작성한 후.....</p>			
평가	<p>■ 교육 내용에 대한 느낀 점 등 약속</p> <p>예) 자녀와의 관계 및 가치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p>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

3) 심리검사 실시기록 및 심리검사 상세기록

(1) 심리검사 관련 인정 기준

- 1, 2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 3급 : 별도의 심리검사기준을 두지 않음(단, 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는 제외)

(2) 심리검사의 유형

- 전국 표준화검사 :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행동의 표집을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교하는 체계적 절차를 통해 제작된 심리검사
 - 예) MMPI, MBTI,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
- 투사검사 : 비구성적인 자극 즉 애매한 자극에 대한 개인반응을 분석하는 심리검사
 - 예) Rorschach Test, 주제통각검사, BGT 등

(3) 심리검사 실시기록에 제시된 사례수만큼 심리검사 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 ‘심리검사 실시기록’지에 총 40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면, ‘심리검사 상세기록’은 총 40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4) 심리검사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예 시 >

4-1 심리검사 실시기록(1급)

** 1, 2급의 경우, 전국표준화검사와 투사적 검사만 인정

사례번호	검사일시	검사종류	실시기관 및 장소
1	2005 년 2 월 28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2	2005 년 3 월 31 일	적성탐색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3	2005 년 4 월 20 일	로샤	한국청소년상담원
4	2005 월 4 월 20 일	MMPI	한국청소년상담원
5	2005 년 4 월 20 일	HTP	한국청소년상담원
6	2005 년 4 월 21 일	SCT	한국청소년상담원
7	2005 년 4 월 21 일	K-WISC	한국청소년상담원
8	2005 년 5 월 3 일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9	2005 년 5 월 3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10	2005 년 5 월 10 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원
~	년 월 일	생략	
40	2008 년 12 월 24 일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청소년상담원
총 검사사례		총 40 사례	

**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10사례*4년=40사례 이상

4-2. 심리검사 상세기록

**** 심리검사 기록사항과 아래 양식이 동일한지 확인**

사 례 번 호	1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피검사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17 세	학 력	고 퇴
검 사 일 시	2009년 2 월 28 일 (심리검사가복지와 동일)		검사소요시간	1 시간		
실시검사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심리검사가복지와 동일) 					
검 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J(부가 설명 가능) <p>예) (15, 24, 32, 16) 현실감이 뛰어나고 일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으며.....</p>					
피검자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사 평가 약속 <p>예)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일중심적으로.....</p>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